연대

성추행

검찰의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성추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탄한다 !!!

지난 3월 20일 서울지검 형사 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인재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용기를 내서 고소한 피해자들과 이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의 근거로 당시 현장 상황이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장상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정밀감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지 못하며, 고소인들의 진술도 정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정황론은 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진압경찰 다수가 상부의 지시없이 성폭력행위를 하기에는 너무나 의무복명중인 전경들로서 눈군가의 호령과 같은 소리에 의해 일제히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보편 증거불충분과 고소인 증인의 부정확성은 증거를 구하기 힘든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피해자의 증언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진압 상황과 경찰 수사상황은 한 마디로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 기자들의 취재도 제지를 당했고, 심지어는 여기자조차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기자협회보 96년 8월 24일자). 피해 여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성추행을 중단했다가 그들이 사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다시 자행하는 방식으로 했다지 않은가. 더욱이 당시에 인행되었던 수많은 남여학생들이 이런 성추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고소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피고소인의 불특정성이란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91년도의 강경대군 치사사건의 가해자를 찾아 냈듯이 충분히 당시의 작전일지와 부대배치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며 최소한 진압책임자는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박일용전경찰청장의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불특정성이라는 무혐의의 근거가 해당이 안된다. 검찰은 박일용전경찰청장을 조사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진압 이후 박일용 경찰청장은 "시위 진압시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의 인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경찰의 사기만 떨어뜨릴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불공정하고 소신없는 수사태도로 국민적인 불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본인의 임무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이거늘, 경찰에 의한 성추행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시 눈을 감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시위진압과 연행과정, 수사과정, 최근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문제가 올바로 밝혀져 책임자들이 처벌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범죄를 무혐의처리한 검찰은 각성하라 !!!
1. 정부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 성교육을 실시하라!!!
1. 정부는 한총련여대생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1. 정부는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를 도입하라!!!

1997년 4월 3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 순)

서 울 지 방 검 찰 청

(530 - 4772)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929

1997. 4. 3.

수 신 박 성 아 발 신 서울지방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 사 박 홍 수 ㊞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1996 년 형제 126560,126561,126562, 126563,126564,126565, 126566,126567 호
② 고 소 인 성 명		지 은 희
피 의 자 (피고소인)	③ 성 명	1.가.다. 성명불상 2.나.라. 성명불상 3.마. 박 일 룡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별지와 같음
⑥ 처 분 연 월 일		1997. 3. 28.
⑦ 처 분 요 지		각 혐의없음
⑧ 공 소 부 제 기 이 유		별지와 같음 (불기소 이유)
⑨ 비 고		

범 지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방조)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방조)

마.직무유기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박일룡은 1996.8.20.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산 9 소재 연세대학교 대학종합관에서 범청학련 제6기 통일대축전등 집회와 관련하여 시위 농성중이던 다수의 시위자들을 검거 및 연행하기 위한 이른바"독수리 계획"의 총 지휘책임자로써 당시 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위 각 성명불상자들은 위 시위진압작전 수행당시 위 종합관 안팎에서 시위자들을 검거.연행하는 작전에 참여하였던 현장 지휘책임자 및 위 작전에 투입된 일반경찰,전경,의경들인 자인 바,

1.피의자 성명불상 현장진압경찰들은,

1996.8.20.05:40경부터 동일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연세대 종합관에서 고소인 강정화(여,19세), 동 박수진(여, 21세). 동 장 희(여, 22세), 동 문수진(여, 22세), 동 박상미(여, 20세), 동 권민영(여, 19세), 동 정선희(여, 21세)를 포함한 농성학생들 4,000여명을 검거하여 1층까지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 수명은 곤봉과 발로 고소인 강정화; 동 정선희를 포함한 학생들을 구타하는 한편 고소인들을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채 계단을 내려가는 고소인등 일부연행여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등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동녀들을 추행하고,

2.같은 성명불상 현장진압책임자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피의자들이 위와같이 연행학생들에게 구타나 추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 지휘에 만전을 기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연좌에 불구하고 고소인을 포함한 연행학생들에게 위와같이 구타 또는 추행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고,

3.같은 박인룡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항의 피의자들이 연행학생들을 상대로 위와같이 구타나 추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압경찰들에게 공권력 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를 묵인에 부치겠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내림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수사한 결과

1.성명불상 현장진압경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 고소인들이 위 장소에서 농성하다가 위 일시경 경찰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은 인정됨

○ 고소인들은 연행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구타하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타하거나 추행한 경찰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여 피의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의자들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동인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

○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최광진, 동 상지영, 동 김봉대, 동 홍진국, 동 조봉래는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마리 어떠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고 또한 당시 진압

가슴과 잉덩이 등을 먼저 구행하였고 현장 진압책임자들이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 당시 연행과정에서 연행학생등을 때리기나 추행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당시 시위 진압을 명령한 명령권자중에 일부라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누가 그와 같이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지 지목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달리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등인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

○당시 진압중대의 중대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참고인 이충호, 동 이규문, 동 허종철, 동 박천계, 동 임성덕, 동 김철민은 진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사전에 중대원들에게 어떠한 폭언이나 폭력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하였으며 진압책임자 누구도 연행학생들에 대한 폭력 또는 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

○진항 기재와 같이 진압경찰의 폭력 또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진압책임자들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 없음

○범죄혐의 없음

3.피의자 박일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경찰관들은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상부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진술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공권력 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

심수는 분분에 부치겠다는 위무지침을 내림으로써 폭력이나 추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라는 내용의 1996. 9. 6. 자 '파출소 경찰관 기본근무자세 확립 재강조 지시' 공문(기록 1017정)의 내용으로서 본건과는 무관한 것임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음

○ 범죄혐의 없음

이에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함.

○ 무고판단 : 농성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행사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려움